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69호 2024. 3. 19.(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24호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남해군 고시 제2024-25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3
남해군 고시 제2024-26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서상스포츠파크)사업(보물섬 남해FC 클럽 하우스 건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5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371호 보상계획 열람 재공고 「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7
남해군 공고 제2024-376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남해군 공고 제2024-378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남해군 공고 제2024-379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6
남해군 공고 제2024-382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31
남해군 공고 제2024-388호 남해군 금고 지정 계획 공고	33
남해군 공고 제2024-390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남해군 공고 제2024-39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7
남해군 공고 제2024-39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0
남해군 공고 제2024-394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등 3개 훈령 일괄개정훈령안 행정예고	67
남해군 공고 제2024-400호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71
남해군 공고 제2024-403호 「재결서 정본 공사송달 공고[남해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	83

남해군 공고 제2024-407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정비공사]	85
남해군 공고 제2024-410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7
남해군 공고 제2024-417호	『금송소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96
남해군 공고 제2024-418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금송소하천 정비사업)	98
남해군 공고 제2024-421호	『안지소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00
남해군 공고 제2024-422호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02
남해군 공고 제2024-424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안지소하천 정비사업)	105
남해군 공고 제2024-444호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107
남해군 공고 제2024-450호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10
남해군 공고 제2024-452호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17
남해군 공고 제2024-455호	유어장 지정사항 공고	121

회 략									
-----	--	--	--	--	--	--	--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 - 24호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11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참조
-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

[붙임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840번지 일원	44,149	증)501	44,650	남해군고시 제2022-59호 (2022.4.14.)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폐기물처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증가(증501㎡) A = 44,149㎡ → 44,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대상지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을 반영하고 지붕공사 및 향후 유지보수 시 사용할 대형크레인(150톤)의 안정적인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부지 경계 조정코자 금회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붙임] 지정 해제 도면



남해군 고시 제2024 - 26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서상스포츠파크)사업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98-49호(1998.03.12.)로 최초결정 고시되고, 지난 남해군 고시 제2023-132호(2023. 9. 20.)로 최종 결정 고시된 군관리계획(체육시설:서상스포츠파크)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사업(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의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3. 13.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8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서상스포츠파크) 사업
- 명 칭 :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223,005㎡(중 금회 건축시설 용지 3,800㎡)
- 건축면적 : 1,097.43㎡(금회 증축분)

남 해 군 공 보

(6) 제 769 호

2024년 3월 19일

○ 토지이용계획(변경) : 체육시설 및 녹지용지 감소, 건축시설용지 증가

용도	시설명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23,005.00	-	223,005.00	100	
체육시설	소계	66,196.00	감)3,197	62,998.00	28.25	
	체육시설	66,196.00	감)3,197	62,998.00	28.25	
건축시설	소계	2,302.65	증)3,800	6,102.65	2.74	
	건축시설	2,302.65	증)3,800	6,102.65	2.74	금회증설
기반시설	소계	40,275.00	-	40,275.00	18.06	
	주차장	12,596.00	-	12,596.00	5.65	
	도로	27,412.00	-	27,412.00	12.29	
	오수처리장	267	-	267	0.12	
기타시설	소계	21,743.00	-	21,743.00	9.75	
	경찰수련원	21,743.00	-	21,743.00	9.75	
녹지	소계	92,488.35	감)602	91,886.35	41.20	
	녹지	92,488.35	감)602	91,886.35	41.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문화체육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5년 7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1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 및 문화체육과(☎055-860-8682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3,800	3,800					
1	서면	서상리	1182	8	잡	3,800	3,800	남해군	공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 - 371호

보상계획 열람 재공고

「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동천3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 나.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0-3 일원
- 다. 사업규모 : L=2,200m, (급경사지 정비 L=575m)
- 라. 시 행 자 : 남해군수

2. 보상계획 및 열람

가. 토 지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190-4번지 외 31필지 일원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4. 3. 4. ~ 2024.3. 18.
- 재공고 사유 : 분할 측량 완료에 따른 편입 면적 일부 조정
- 열람 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 기간 만료 후 보상 협의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5. 보상절차, 보상방법

-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체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

용 지 조 서(전체)

구 분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주 소	성 명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대장면적	편인면적			
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0-4		임	143	143		남해군	
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0-3		도	299	299		남해군	
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87-1		도	148	148		국토교통부	
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87-2		도	595	595		남해군	
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89-1		도	1,214	1,2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보곡3길 40, 106동 2404호(울산온양서회스타힐스)	김0영	13분의2
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1	산 196-15	임	16,507	204	서월 노원구 상계동 143-1	강0철	
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6		도	2,305	2,305		남해군	
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10		도	626	626		남해군	
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11		도	115	115		남해군	
1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7		도	1,469	1,469	삼동면 동천리 312	박0호	
1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196-8		도	118	118	삼동면 동천리 312	박0호	
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1-5		도	77	77		남해군	
1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6		도	31	31		남해군	
1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9		도	28	28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2길 45-16 (성동동)	김0래	
1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4		답	43	4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길로 132	김0모	
1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5-2		도	79	7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15	김0성	
1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8		도	1	1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2길 45-16 (성동동)	김0래	
1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7		도	22	22		남해군	
1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93-2		도	96	96		남해군	
2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3-5		도	198	198		남해군	
2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3-10		도	211	211	삼동면 동천리 266	빈0오외5인	
2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3-8		도	86	86	삼동면 동천리 266	빈0오외5인	
2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3-1	산 303-14	임	20,312	73		남해군	
2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7-14		도	72	72	삼동면 동천리 330	문0암	
2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7-7		도	2,281	2,281		남해군	
2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7-9	산 307-16	임	8,511	1,161		남해군	
2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07-12		도	790	790		남해군	
2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1-2		도	198	198		남해군	
2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1-4		도	142	142		남해군	
3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1-6		도	228	228		남해군	
3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1-8		임	365	365		남해군	
3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295-3		도	298	298		남해군	
합계					57,608	13,716			

남해군 공고 제2024 - 376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제3조)

-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202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3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8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42, 팩스 055-860-3983
- 3). 이메일 : hash999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마늘팀(☎055-860-39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4년 6월 30일” 을 “2029년 6월 30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 ----- 2029년 6월 30일-----.

남해군 공고 제2024 - 378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 분리배출 시행
-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및 일부 대형 폐기물의 수거수수료 인상, 불연성마대 가격 결정

3. 주요내용

-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규정 신설 및 분리배출 의무 명시
-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10% 인상 및 수거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일부 대형 폐기물의 수거수수료 인상

○ 종량제봉투 가격 변경(안)

규격	현행	변경
5리터	100원	110원
10리터	200원	220원
20리터	400원	440원
50리터	1,000원	1,100원

○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변경(안)

품명	규격	현행	변경
침대	2인용(돌침대)	20,000원	25,000원
	1인용(돌침대)	15,000원	20,000원
	2인용	15,000원	20,000원
	2인용 매트리스	8,000원	15,000원
	1인용	10,000원	15,000원
	1인용 매트리스	5,000원	10,000원
식탁	대리석 5인용 이상	8,000원	15,000원
	대리석 4인용 이하	6,000원	10,000원
소파	4인용 이상	6,000원	10,000원
	3인용	4,000원	8,000원
	2인용	3,000원	6,000원
	1인용	2,000원	4,000원
의자	안마용	5,000원	10,000원
물통 (저수조)	5톤 이상	15,000원	30,000원
	5톤 미만	10,000원	20,000원

○ 불연성 마대 가격(안)

규격	가격	규격	가격
10리터	400원	20리터	600원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3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환경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62, 팩스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전화 055-860-326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가연성폐기물"이란 불에 탈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 7. "불연성폐기물"이란 제6호에 따른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 제1항 중 “재활용가능자원이 아닌 폐기물과”를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신고번호)이나”를 “배출신고번호를 기재하거나”로 한다.

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군수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우수 폐기물 관리자 선정 및 포상
 - 2. 폐기물 관련 기관·단체 선진지 견학 경비

제15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총량제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 관련)

[단위 : 원]

규격	일반용(가연성) 봉투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5 ℓ	100	10	110
10 ℓ	200	20	220
20 ℓ	400	40	440
50 ℓ	1,000	100	1,100
규격	불연성 마대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10 ℓ	370	30	400
20 ℓ	550	50	600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15조 관련)

[단위 : 원]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	냉장고	900 l 이상	12,000	
		700 l 이상	10,000	
		500 l 이상	8,000	
		300 l 이상	6,000	
		300 l 미만	4,000	
		김치냉장고	6,000	
2	텔레비전	24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장식대	2,000	
3	세탁기	10kg 이상	6,000	
		10kg 미만	4,000	
4	냉·난방기	세로형(폭50cm당)	5,000	
		벽면부착용	4,000	
		환풍기(팬)	3,000	
5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3,000	
6	오븐렌지	폭1m 이상	4,000	
		폭1m 미만	2,000	
7	전자·전기·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8	가스렌지 후드	모든 규격	2,000	
9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10	청소기	모든 규격	2,000	
11	난로	모든 규격	3,000	
12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13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4,000	
14	VTR, 타자기	모든 규격	2,000	
15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수기, 가습기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6	선풍기	일반, 벽걸이	2,000	
		스탠드 대형	3,000	
17	전기밥솥(통)	모든 규격	2,000	
18	노트북	모든 규격	2,000	
19	컴퓨터	본체	3,000	
		프린터	2,000	
		모니터	2,000	
		키보드	1,000	
20	팩스기	모든 규격	2,000	
21	전자복사기	모든 규격	3,000	
22	러닝머신	모든 규격	8,000	
23	의류관리기(스타일러)	모든 규격	5,000	
24	오디오	폭1m 이상	4,000	
		폭1m 미만	3,000	
		스피커 1개당	1,000	
		장식장	2,000	
25	기타 소형가전	모든 규격	2,000	
26	보일러	폭 1m 이상	5,000	
		폭 1m 미만	3,000	
27	전기장판(옥매트)	2인용 이상	5,000	
		1인용	3,000	
28	장롱, 옷장	폭30cm당	3,000	
29	침대	2인용(돌침대)	25,000	
		1인용(돌침대)	20,000	
		2인용	20,000	
		2인용 매트리스	15,000	
		1인용	15,000	
		1인용 매트리스	10,000	
30	식탁	대리석 5인용 이상	15,000	
		대리석 4인용 이하	10,000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31	채봉틀	모든 규격	3,000	
32	거실장	폭1.5m 이상	4,000	
		폭1.5m 미만	3,000	
33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34	서랍장	1단당	1,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35	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책장	폭1.5m 이상	6,000	
		폭1m 이상	5,000	
		폭1m 미만	3,000	
36	책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책꽂이	2,000	
37	캐비닛	높이1.8m 이상	5,000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3,000	
38	싱크대	찬장 1쪽당	4,000	
		1쪽당	3,000	
39	소파	4인용 이상	10,000	
		3인용	8,000	
		2인용	6,000	
		1인용	4,000	
40	의자	안마용	10,000	
		학생용	1,000	
		업소(사무)용	2,000	
41	피아노	어프라이트	15,000	
		그랜드	20,000	
		오르간	4,000	
42	쌀통	모든규격	2,000	
43	유리종목(거울, 액자)	m ² 당	1,000	
44	병풍	모든 규격	3,000	
45	문짝	0.9m×1.8m당	3,000	
46	자전거	성인용	2,000	
		어린이용	1,000	
47	유모차,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48	보행기	모든 규격	1,000	
49	물통(저수조)	5톤 이상	30,000	
		5톤 미만	20,000	
50	간판	입간판	2,000	
		0.6m×1.8m 미만	4,000	
		0.6m×1.8m 이상	7,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51	세면기	모든 규격	2,000	
52	어항, 수족관 (가정용)	1m 이상	5,000	
		1m 미만	2,000	
53	변기	모든 규격	3,000	
54	욕조	모든 규격	5,000	
55	실버카	모든 규격	2,000	
56	카펫, 장판, 대자리	3.3㎡당	2,000	
57	조명기구	모든 규격	2,000	
58	칸막이 패널	1㎡ 이상	3,000	
		1㎡ 미만	2,000	
59	시계	입식용	2,000	
		벽걸이용	1,000	
60	이불	솜이불	3,000	
		홀이불(담요)	2,000	
61	쿠션, 베개	모든 규격	1,000	
62	의류 건조대	모든 규격	2,000	
63	옷걸이	스탠드형	2,000	
		벽걸이형	1,000	
64	블라인드	모든 규격	2,000	
65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66	창문틀	1m×1m당	2,000	
67	가방	일반가방	1,000	
		여행용	2,000	
		대형(골프, 낚시)	3,000	
68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1,000	
69	화분	모든 규격	1,000	
70	반려동물 구조물	개집	3,000	
		캣타워	3,000	
71	암롤박스(롤온박스)	4.5㎡ 1대당	60,000	
72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73	폐소화기	3.4kg 이상	3,000	
		3.4kg 미만	2,000	
74	마대(잡쓰레기 등)	10kg 당	2,000	
75	대야	50cm 미만	2,000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에 준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가연성폐기물“이란 불에 탈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u></p> <p>7. <u>“불연성폐기물“이란 제6호에 따른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u></p>
<p>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시 <u>재활용 가능자원이 아닌 폐기물과 재활용가능 자원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u></p> <p>②·③ (생 략)</p> <p>④ 대형폐기물은 배출하기 전 읍·면행정 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폐기물배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한 후, <u>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신고번호)이나</u>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정장소로 배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폐기물,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배출신고 번호를 기재하거나 ----- ----- -----</p>
<p>⑤ ~ ⑨ (생 략)</p> <p>제9조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 ⑦ (생 략)</p> <p><신 설></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p>제9조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군수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u></p>

제1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생 략)

② 배출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
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폐기물 관리자 선정 및 포상

2. 폐기물 관련 기관·단체 선진지 견
학 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해군 공고 제2024 - 379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종량제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에 관한 사항 개정
- 종량제봉투의 사양에 관한 사항 개정

3. 주요내용

-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 구분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에 관한 사항 개정
- 종량제봉투의 사양에 관한 사항 개정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3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환경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62, 팩스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전화 055-860-32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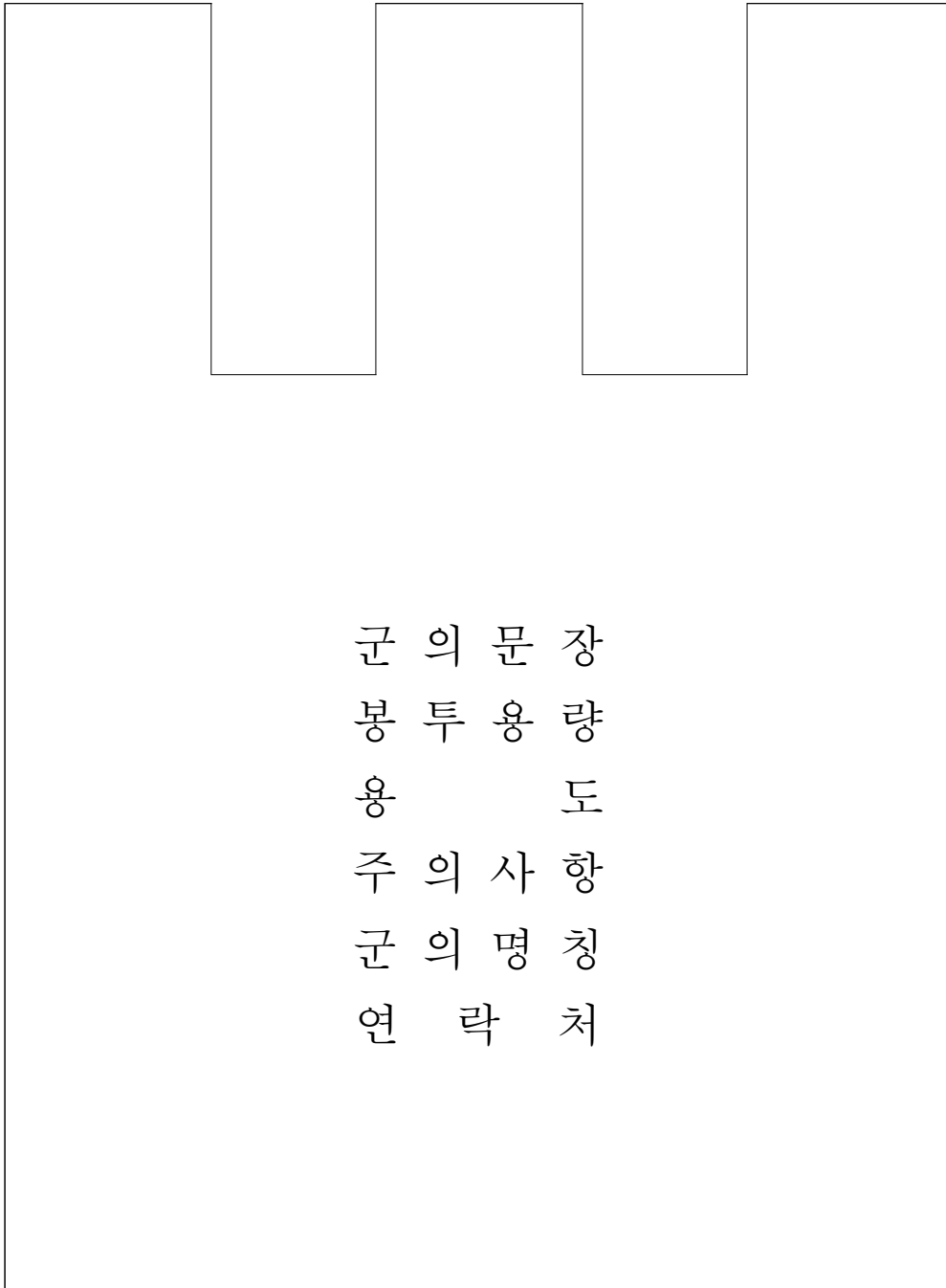
중량제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봉투 종류	용량	규격(cm)	용도	비고
가연성	5 l	26 × 46.5	일반용	
	10 l	33 × 56.5	일반용	
	20 l	42 × 69.5	일반용	
	50 l	56 × 91.5	일반용, 공공용	
불연성	10 l	32 × 55	일반용	
	20 l	40 × 65	일반용	

[별표 2]

중량제 봉투의 사양

일반용(가연성) 봉투



군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군 의 명 칭
 연 락 처

□ 불연성 마대

군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군 의 명 칭

연 락 처

남해군 공고 제2024 - 382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우리 군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리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권리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4.

남 해 군 수

1. 공고기간 : 2024. 3. 4. ~ 2024. 3. 24.(20일간)
2. 강제처리(폐차말소)일 : 2024. 1. 11.(폐차), 2024. 2. 27.(말소)
3. 강제처리(폐차)장소 : 하남폐차장 (붙임 참조)
4. 강제처리(폐차)대상 : 방치차량 3대 (붙임 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께서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되며, 차내에 있는 모든 물품도 함께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강제처리(폐차) 후에는 같은 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만원 또는 150만원) 통고처분이나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압류권자 등)은 상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 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055-860-3455)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내역

연 번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소 유 자(법인)		방 치 장 소	보관장소
			성 명			
1	경남40가6798	아반떼오토메틱	고*레미권(주)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진리 998-1	하남폐차장 (경남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598)
2	61노6652	말리부 2.0 DOHC	김*봉		경상남도 남해군 북변리 473-5 CF모텔 앞 도로	하남폐차장 (경남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598)
3	1367가1814	K7	김*석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22-1	하남폐차장 (경남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598)

*폐차일 : 2024.1.11. 직권말소일: 2024.2.27.

남해군 공고 제2024 - 388호

남해군 금고 지정 계획 공고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남해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남 해 군 수

-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 2. 약정기간 : 3년(2025. 1. 1. ~ 2027. 12. 31.)
- 3. 금고의 수 : 2개(제1금고, 제2금고)
- 4. 금고별 취급회계
 - 가. 제1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일부)
 - 나. 제2금고 : 기금(일부)
 - ※ 금고지정 공고이후 설치되는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경우 회계연도와 약정기간은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적용함.
- 5. 금고의 주요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지급
 - 현금과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판매
 -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업무
 - 지출원의 지출대행 약정 관련 업무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신청자격

-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공고일 현재 남해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금융기관

7. 공고 및 신청절차

가. 금고지정 공고

- 공 고 일 : 2024. 3. 5.(화)
- 공고방법 : 군 공보, 남해군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24. 3. 5. ~ 2024. 3. 20.(15일간)

나. 제안서 교부 및 관계서류 열람

- 기 간 : 2024. 3. 5.(화) ~ 2024. 3. 20.(수) 09:00~18:00
- 장 소 : 남해군청 재무과
- ※ 예산서, 결산서는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다.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24. 3. 21.(목) ~ 2024. 3. 22.(금) 09:00~18:00
- 장 소 : 남해군청 재무과
- 제출서류 : 군 금고 지정을 위한 제안서류 일체
 -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서, 사용 인감 확인서, 각서,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부속서류 등 포함)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제안요약서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금융기관장 인감으로 반드시 봉인할 것)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참조

9. 평가방법

- 가.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
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평가함.
- 나.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주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
(부금고)로 지정함.

10. 기타사항

- 가. 제안서는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붙임 2」 참조
- 나.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 다. 금고지정을 위한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라. 금회 지정금고의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과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남해군에 배상하여야 한다.
- 마.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니 작성 및 제출 시 주의를 요함.
- 바. 금고 약정 후 신설 또는 변경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정·약정은 군수가 지정하여 결정함
- 사.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재무과(☎ 055-860-318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건전성)	(8) (4) (4) (22) (7) (7) (6) (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5) (2)	

남해군 공고 제2024 - 390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조례상의 행정규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하여 총 10건의 개선대상을 발굴하여 일괄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목록

연번	부서명 (팀명)	제 명	비고
1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법제처 규제개선자료
2	경제과 (지역경제팀)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법제처 규제개선자료
3	경제과 (지역경제팀)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지침
4	경제과 (지역경제팀)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법제처 규제개선자료
5	건설교통과 (교통팀)	남해군 주차장 조례	타시군 개선사례
6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법제처 규제개선자료
7	해양발전과 (어항관리팀)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법제처 규제개선자료
8	환경과 (환경정책팀)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 상 등에 관한 조례	법제처 규제개선자료
9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법제처 규제개선자료
10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 영 조례	규제조정실 행정규제자료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3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055-860-30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조(「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 를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군수” 로 한다.

제3조(「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업종” 이란” 을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 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의 개정)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5조(「남해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0미터” 를 “300미터” 로, “300미터” 를 “600미터” 로 한다.

제6조(「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른다.

제8조(「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9조(「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0조(「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3일 이내에 변상”을 “변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변상완료 시까지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별표 1의 농업기계 사용 중 파손하여 3일 이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p>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생 략)</p> <p>② <u>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면장이 이를 책임 지지 아니한다.</u></p> <p>제15조(양도금지) <u>사용자는 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 하지 못한다.</u></p>	<p>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 음)</p> <p><삭 제></p> <p><삭 제></p>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p>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 ④ (생 략)</p> <p>⑤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u></p> <p>1. 2. (생 략)</p>	<p>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군수</u>----- ----- -.</p> <p>1. 2. (현행과 같음)</p>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p>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생 략)</p> <p>② <u>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생 략)</p> <p>2. <u>「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u></p>	<p>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 체</u> -----.</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3. 4. (생 략) ③ (생 략)</p>	<p>3.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p>	
<p>제5조(신고)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생 략) 2. <u>시장사용권을 상속 받았을 때</u></p> <p>제6조(사용권의 양도금지) <u>시장사용권은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외에는 군수의 허가없이 전대할 수 없다.</u></p>	<p>제5조(신고) ----- ----- ----- -----.</p> <p>1. (현행과 같음) <삭 제></p> <p><삭 제></p>
<p>남해군 주차장 조례</p>	
<p>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등)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u>200미터</u> 이내 또는 도보거리 <u>300미터</u> 이내로 한다.</p>	<p>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등) ---- ----- ----- ----- ----- <u>300미터</u> ----- ----- <u>600미터</u> -----.</p>
<p>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p>	
<p>제29조(수강승인 및 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 승인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 3. (생 략) 4. <u>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 및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u></p> <p>② <u>제1항의 처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u></p>	<p>제29조(수강승인 및 사용허가 취소)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 <삭 제></p> <p><삭 제></p>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및 책임) ① (생략)

②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며, 농업기계의 고장,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3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별표 1]

농업기계 임대조건 위반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제6조제6항 관련)

임대조건 위반사유	사용제한 기간				비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농업기계 사용 중 파손하여 3일 이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회		2회	3회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및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변상-----
----- . 이 경우 변상완료 시까지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농업기계 임대조건 위반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제6조제6항 관련)

임대조건 위반사유	사용제한 기간				비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삭제>					

남해군 공고 제2024 - 39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24.5.17. 시행 예정임에 따라, 안정적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하여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괄개정 조례 목록

연번	부서(팀)	제 명	비 고
1	행정과 (행정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문화체육과 관련
2	행정과 (대외협력팀)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4	재무과 (부과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5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6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7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	
8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남해군 전통문화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10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11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12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13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3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055-860-30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3조(「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상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보호구역안”으로 한다.

제5조(「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문화재(박물관 자료)수증심의서”를 “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로 한다.

제6조(「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7조(「남해가천마을다랑이는 보존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가천마을다랑이는 보존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남해군 전통문화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향토문화재가”를 “향토유산이”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또는 경상남도문화재 보호조례의하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하 “비지정국가유산”이라 한다)”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을 “비지정국가유산 중”으로, “것”을 “것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최소한의 구역”을 “최소한의 구역을 말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준용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도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0조(「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41조의6의 제목“(등록문화재의 건폐율 특례)”를“(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다른 등록문화재”를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8조의4의 제목“(등록문화재의 용적률 특례)”를“(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다른 등록문화재”를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안내시설물의 시설물의 종류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3조(「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8호의 재난관리 주관기관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호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관광경제국) ① (생 략)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2. (생 략) 3. 체육행정, 문화예술, <u>문화재</u> ,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4. 5. (생 략)	제6조(관광경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u>국가유산</u> ----- ----- 4. 5.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 ② (생 략)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1. 「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13. (생 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13. (현행과 같음)
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남해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 4. (생 략)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1. ~ 4. (현행과 같음)

남 해 군 공 보

(54) 제 769 호

2024년 3월 19일

<p>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p>	<p>5. ----- ----- ----- 국가유산 -----</p>
<p>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p>	
<p>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제5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으로 ----- ----- ----- ----- 보호구역안----- ----- ----- -----</p>
<p>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p>	
<p>[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p>	<p>[별지 제2호서식] 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p>
<p>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수장품”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임시보관, 대여 등에 따라 문학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3. ~ 10. (생 략)</p>	<p>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국가유산 ----- ----- ----- 3. ~ 10. (현행과 같음)</p>
<p>남해가천마을다랑이는 보존 및 관리 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이하 “다랑이논” 이라 한다)이란 남면 흥현리 가천마을 내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5호로 지정된 계단식 농지를 말한다.</p> <p>2. 3. (생략)</p> <p>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5. (생략)</p> <p>6.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1. ----- ----- ----- 국가지정유산 -----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국가유산 ----- -----</p>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고려대장경 판각지”란 고려대장경 판각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및 발굴 조사된 유적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매장유산 ----- -----.</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전통문화 및 전승 제례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p> <p>7.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향토유산이 ----- -----</p> <p>7. (현행과 같음)</p>
<p>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및</p>	<p>제7조(준용) ----- ----- 「문화유산의 보존 및</p>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따른다.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유적”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또는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의하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중요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적(유물을 포함한다.)

2. “향토사료”라 함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사료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사료로서 향토의 문화, 토속연구에 중요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향토유적보호구역”이라 함은 향토유적 및 향토사료의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제11조(지정기준) 향토유적 및 향토사료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적 : 국가·도지정 문화재, 전통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

제2조(정의) -----.

1. -----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이하 “비지정국가유산”이라 한다) ----- 포

2. ----- 비지정국가유산 중 ----- 것을 말한다.

3. ----- 최소한의 구역을 말한다.

<삭 제>

2. 향토사료 : 국가·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 무형의 사료로서 향토의 문화, 토속, 풍속 연구에 필요한 사료

제12조(보호구역) 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부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를 준용한다.

②·③ (생략)

제16조(안내표지) ① (생략)

② 안내판의 종류, 내용 및 규격 등 세부사항은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의 예에 준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보호구역) ① -----

--. 다만,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준용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안내표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도지정유산-----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생략)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생략)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다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생략)

③ ~ ⑥ (생략)

제41조의6(등록문화재의 건폐율 특례)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 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8조의4(등록문화재의 용적률 특례)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다.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6(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특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48조의4(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 특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제15조 관련)

- 1.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제15조 관련)

- 1. 다음의 분류에 따른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류	시설물의 종류
안내 시설물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분류	시설물의 종류
안내 시설물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1호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죽방렴의 홍보를 위해 조성된 남해 죽방렴관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지정유산 -----

-----.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18.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18.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남해군 공고 제2024 - 39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24.5.17. 시행 예정임에 따라, 안정적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하여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괄개정 규칙 목록

연번	부서(팀)	제 명	관련부서
1	기획조정실 (감사팀)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2	행정과 (행정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핵심전략추진단, 문화체육과 및 읍·면 관련
3	행정과 (행정팀)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4	행정과 (후생팀)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핵심전략추진단 문화체육과 관련
5	환경과 (환경정책팀)	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3월 2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055- 860-30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2조(「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핵심전략추진단의 담당사무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문화체육과 담당사무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별표 4의 담당사무란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 보호”으로 한다.

제3조(「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의 2호의 시설 직렬의 건축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로 한다.

제4조(「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개정)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핵심전략추진단의 청사신축의 단위사무명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의 관광경제국의 구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문화재의 단위사무명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문화재가” 를 “국가유산이”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 라. (생 략) 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2. ~ 4. (생 략)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 ----- ----.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 4. (현행과 같음)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p>[별표 1]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4조 관련)</p> <p><핵심전략추진단></p> <table border="1"> <thead> <tr> <th>담 당 사 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③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td> <td></td> </tr> <tr> <td>1.~9. (생 략)</td> <td></td> </tr> <tr> <td>10. 문화재 시발굴 및 음성정비</td> <td></td> </tr> <tr> <td>11.~15. (생 략)</td> <td></td> </tr> </tbody> </table>	담 당 사 무	비고	③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		1.~9. (생 략)		10. 문화재 시발굴 및 음성정비		11.~15. (생 략)		<p>[별표 1] 군 본청 사무분장표(제4조 관련)</p> <p><핵심전략추진단></p> <table border="1"> <thead> <tr> <th>담 당 사 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③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td> <td></td> </tr> <tr> <td>1.~9. (생 략)</td> <td></td> </tr> <tr> <td>10. 국가유산 시발굴 및 음성정비</td> <td></td> </tr> <tr> <td>11.~15. (생 략)</td> <td></td> </tr> </tbody> </table>	담 당 사 무	비고	③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		1.~9. (생 략)		10. 국가유산 시발굴 및 음성정비		11.~15. (생 략)	
담 당 사 무	비고																				
③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																					
1.~9. (생 략)																					
10. 문화재 시발굴 및 음성정비																					
11.~15. (생 략)																					
담 당 사 무	비고																				
③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																					
1.~9. (생 략)																					
10. 국가유산 시발굴 및 음성정비																					
11.~15. (생 략)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2]

본청 사무전결처리사항

<핵심전략추진단>

구분	담 당 사 무
청사 신축	11.~17. (생 략)
	18. 문화재 시발굴 및 음성 정비
	19.~21. (생 략)

<관광경제국>

구분	담 당 사 무
문화재	33 문화재 지정 및 보수정비사업
	가. 문화재 지정
	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4.~35. (생 략)
	36. 문화재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7.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38.~40. (생 략)
	41. 비지정문화재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2.~43. (생 략)
	44. 무형문화재 운영 관리
45.~49. (생 략)	
50. 그 밖의 문화재 관련 사항	

[별표 2]

본청 사무전결처리사항

<핵심전략추진단>

구분	담 당 사 무
청사 신축	11.~17. (생 략)
	18. 국가유산 시발굴 및 음성 정비
	19.~21. (생 략)

<관광경제국>

구분	담 당 사 무
국가 유산	33 국가유산 지정 및 보수정비사업
	가. 국가유산 지정
	나.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34.~35. (생 략)
	36. 국가유산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7. 국가유산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38.~40. (생 략)
	41. 비지정국가유산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2.~43. (생 략)
	44. 국가무형유산 운영 관리
45.~49. (생 략)	
50. 그 밖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	

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산림
3. 4. (생 략)

제4조(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이 -----
3. 4.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24 - 394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등 3개 훈령 일괄개정훈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등 3개 훈령」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남 해 군 수

1. 행정규칙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등 3개 훈령 일괄개정훈령안」

2.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24.5.17. 시행 예정임에 따라, 안정적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하여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괄개정 훈령 목록

연번	부서(팀)	제 명	비 고
1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남해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2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남해군 통계사무 처리규정	
3	행정과 (행정팀)	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과 관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3월 26일까지

- 이 행정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055-860-30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훈령 제 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등 3개 훈령 일괄개정훈령안

제1조(「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의 개정)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조례란 중 “지방문화재보호조례”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남해군통계사무처리규정」의 개정) 남해군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문화의 통계명란중 “지정 및 사찰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3조(「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문화체육과의 팀명란 중 “문화재팀”을 “국가유산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	---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별표 3]
조례 제·개정필수입법 예고대상

구 분	조 례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	<u>지방문화재보호조례</u> 포상조례 미술대전조례 등

[별표 3]
조례 제·개정필수입법 예고대상

구 분	조 례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	<u>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u> 포상조례 미술대전조례 등

남해군통계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통계목록

통계 구분	분야별	관리 번호	통계명
F.교육 문화	문화	F-1-1	<u>지정 및 사찰 문화재 관람표 징수 상황 보고</u>

[별지 제1호서식]
통계목록

통계 구분	분야별	관리 번호	통계명
F.교육 문화	문화	F-1-1	<u>지정 유산 관람표 징수 상황 보고</u>

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실·단과·직속기관에 두는 팀장의 직급
및 직렬(제2조제2항 관련)

부 서 명	팀 명	팀장의 직급 및 직렬	비 고
문화체육 과	문화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별표 1]
실·단과·직속기관에 두는 팀장의 직급
및 직렬(제2조제2항 관련)

부 서 명	팀 명	팀장의 직급 및 직렬	비 고
문화체육 과	국가유산 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남해군 공고 제2024 - 400호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2. 제정이유

- 가. 해양낚시레저공원, 요트 계류장, 조도·호도 해상 낚시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나. 사(死)문화된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남해군 요트학교를 일몰하여 효율적인 해양레저산업 시설 운영

3. 주요내용

- 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용어 정의(제2조)
- 나. 해양레저산업 시책의 수립 및 육성 시책(제3조~ 제5조)
- 다. 해양레저산업 시설의 운영(제6조~ 제9조)
- 라. 해양레저산업 시설의 위탁(제10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3월 6일 ~ 3월 26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73, 팩스 055-860-3779
이메일 idjd@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 055-860-3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낙시 관련 활동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기반, 제조, 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 시설을 포함한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 시설”이란 해양레저산업을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4.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 대여 등의 업을 말한다.

제3조(해양레저산업 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 교육, 체험 및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산업 시설 설치
3. 해양레저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업 관련 편의 시설 설치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해양레저 관련 법인·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해양레저 대회개최 등) ① 군수는 국제, 전국 및 도 단위 해양레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 대회개최 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부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해양레저산업 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해양레저산업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 산업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해양레저산업 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해양레저산업 시설에서 교육·체험 프로그램, 낚시터 및 요트 계류장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체험 프로그램, 낚시터 및 요트 계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용 개시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 ① 이용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해양레저산업 시설의 이용 승인일 부터 24시간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군수는 해양레저산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트학교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요트 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의 따른다.

[별표 1]

해양레저산업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5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물건 계류장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84-6번지 지선	
적량 계류장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997-22번지 지선	
적량요트클럽하우스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997-22번지	
해양낚시레저공원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578번지 지선	
조도 해상낚시터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 166번지 지선	
호도 해상낚시터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 210-10번지 지선	

[별표 2]

해양레저산업 시설 이용료(제7조 관련)

1. 교육 ·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 해양낚시레저공원 교육 부문 이용료

구분	과 정	교육 일수	교육·체험 내용	수강료(원)	비고
당기 교육	당기요트 체험	1일	범장해장택캉입출항 숙련	30,000/1인	
	당기요트 입문	2일	세일링 기초기술 숙련과정	50,000/1인	
	당기요트 숙련	3일	세일링 숙련인명구조 과정	60,000/1인	

○ 해양낚시레저공원 체험 부문 이용료

구분	소요 시간	체험내용	체험료(원)	비 고
카약 카누	1시간	카약 카누 체험	20,000원/1인승 30,000원/2인승	
패들보드	1시간	패들보드 체험	20,000원/1인	
낚시	2시간	낚시 체험	20,000원/1인	
통발	2시간	통발 체험	20,000원/1인	

2. 조도·호도 낚시터 이용료

구분	이용내용	이용기준		이용료	비고
조도 낚시터	가두리 낚시체험	조도항 이용	일반	20,000원	○ 가두리 체험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기본 마리 수: 3마리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마리수: 5마리 (4마리째부터 마리당 이용료 7,000원 추가) ※ 가두리 명시 어종 제외 제한 없음
			초등학생	10,000원	
		미조항 이용	일반	40,000원	
			초등학생	20,000원	
		낚시대 대여		10,000원	
호도 낚시터	낚시체험	호도항 이용	일반	20,000원	
			초등학생	10,000원	
		미조항 이용	일반	40,000원	
			초등학생	20,000원	
		낚시대 대여		10,000원	

3. 요트 계류장 이용료

시설별	사용구분	이 용 료		비고
		규 격	금 액(원)	
물 건 계 류 장	일 시 사 용 (척 / 일)	길이 5m 미만	6,000	
		길이 5m 이상 7m 미만	10,000	
		길이 7m 이상 10m 미만	16,000	
		길이 10m 이상	24,000	
	상 시 사 용 (척 / 월)	길이 5m미만	100,000	
		길이 5m이상 6m미만	110,000	
		길이 6m이상 7m미만	130,000	
		길이 7m이상 8m미만	160,000	
		길이 8m이상 9m미만	180,000	
		길이 9m이상 10m미만	200,000	
		길이 10m이상 11m미만	230,000	
		길이 11m이상 12m미만	260,000	
		길이 12m이상 13m미만	300,000	
		길이 13m이상 14m미만	320,000	
		길이 14m이상	별도협의	

적 량 계 류 장	일 시 사 용 (척 / 일)	길이 7m미만	12,000	
		길이 7m이상 10m미만	15,000	
		길이 10m이상 12m미만	17,000	
		길이 12m이상	24,000	
		길이 14m 이상	별도협의	
	상 시 사 용 (척 / 월)	길이 7m미만	150,000	
		길이 7m이상 8m미만	170,000	
		길이 8m이상 9m미만	190,000	
		길이 9m이상 10m미만	210,000	
		길이 10m이상 11m미만	240,000	
		길이 11m이상 12m미만	270,000	
		길이 12m이상 13m미만	310,000	
		길이 13m이상 14m미만	330,000	
		길이 14m 이상	별도협의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 위 계류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 선박의 폭이 넓어 옆 선석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별도 협의하여 계약한다. 			

[별표 3]

해양레저시설의 이용료 감면범위(제8조 관련)

1. 교육 이용료

감면 대상	감면비율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100%
남해군 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00%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50%

2. 체험 이용료

감면 대상	감면비율
남해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100%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50%
남해군 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50%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50%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 가족	50%

3. 요트 계류장 이용료

감면 대상	감면비율
국가, 경상남도 또는 남해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일시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단, 계류장 사용료를 연납(1년 계류비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	10%

※ 감면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시자에 한하며,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항목 1개만 적용함.

[별표 4]

해양레저산업 시설의 이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전액
군수의 귀책 사유로 시설 사용이 중단된 경우	-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 본인이 이용을 포기한 경우	이용 1일 전 취소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 당일 취소	납부한 이용료의 50%

남해군 공고 제2024 - 403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남해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년 01월 30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 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상남도 도시정책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6.

남해군수

1. 사업의 명칭 : 남해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3. 사업장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641-3번지 일원
4. 사업 내용 : 위험교량 재가설(L=76m, B=8.0 ~ 10.0m)
5. 공고 기간 : 2024. 3. 6. ~ 2024. 3. 20. 까지
6. 수용재결기관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7.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8. 공시송달 대상자 : 불임 참고

붙임2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및 사업현황

남해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 공시송달 대상(토지) - 소유자, 관계인

연 번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남해군 상주면)	지번	토지 지목 / 물건 종류		면적(㎡) / 수량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현황	공부	편입					
1	양아리	743-3	답	답	20	20	김0선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560번길 16			
2	양아리	762-3	전	전	4	4	미 등기		박0준		토지대장 상 소유자

○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장 위치	비고
남해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남해군수 (건설교통과)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641-3번지 일원	

남해군 공고 제2024 - 407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21.(목)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7.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급경사지법」에 따른 급경사지 정비공사
- 명칭 :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면)	리	지번 (당초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남면	상가리	산91-1	임	11	사정	미등기	서면 대정리	김0기	사정	
합계		1필지		11				1명		

4. 열람장소 : 남해군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4. 3. 7. ~ 2024. 3. 21.(14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해군 공고 제2024 - 410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5조, 제16조 :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나.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기능 중복 사항 등 보완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3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4,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를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실천 활동 전개
 4.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중 협의회 업무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을 “위촉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 등 지속가능한” 을 “지속가능한”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를 “분과위원회” 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매년” 을 “매년 8월까지” 로, “예산서와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 전에” 를 “소요 예산 내역을” 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협의회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남해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 협력단체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p>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4조(협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p>	<p>제4조(협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의</p>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이행계획 실천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평가
2.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군의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협력 및 연대사업
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의 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 중 협의회 업무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실천 활동 전개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

-----.

다.

-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 2.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 3. (생략)
- ④ (생략)

<신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남해군의회 의원이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 4. (생략)

제8조(총회) ① (생략)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이행계획의 평가 및 보고
- 2. 연간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 3. 협의회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
- 4.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5.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사항
-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7.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③·④ (생략)

제9조(조직) ① 협의회는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삭제>

2. 지속가능한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위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6조(해촉)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제8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조직) ① -----

----- 분과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총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 또는 그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의 위임·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협의회가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에 따른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협력 및 각종 행사
2. 이행계획 실천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평가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삭 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매년 8월까지 -----
----- 소요 예산 내역을 -----

<삭 제>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협의회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군의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남해군 공고 제2024 - 417호

『금송소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금송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11.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4. 3. ~ 2025. 5.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금송소하천 정비사업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14-1 일원	금송소하천 정비공사 L=703.6m B=4.5~6.0m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4. 3. 11. ~ 2024. 3. 25.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3. 11. ~ 2024. 3. 25.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남해	삼동	금송	1031	구	10,921.0	2,010.0	국(농림축산식품부)	-
2	남해	삼동	금송	1338	도	276.0	59.0	국(농림축산식품부)	-
3	남해	삼동	금송	1019	답	922.0	23.0	권순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4	남해	삼동	금송	1030-13	답	391.0	44.0	이종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5	남해	삼동	금송	1030-11	답	454.0	3.0	이규오	-
6	남해	삼동	금송	1287-3	답	649.0	86.0	이호오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길 000
7	남해	삼동	금송	1287-1	답	668.0	66.0	김옥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8	남해	삼동	금송	1029-1	답	1,332.0	51.0	이동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9	남해	삼동	금송	931-1	도	199.0	42.0	이주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000
10	남해	삼동	금송	1434	도	2,536.0	645.0	국(국토교통부)	-
11	남해	삼동	금송	928-3	도	114.0	20.0	이정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12	남해	삼동	금송	922-1	도	39.0	9.0	김옥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13	남해	삼동	금송	910-1	도	91.0	3.0	김옥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14	남해	삼동	금송	1017-1	답	1,367.0	11.0	남해군	-
15	남해	삼동	금송	1009-1	답	957.0	24.0	곽귀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16	남해	삼동	금송	889-2	답	803.0	22.0	이용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00
17	남해	삼동	금송	1437	도	364.0	13.0	국(국토교통부)	-
18	남해	삼동	금송	888	답	740.0	151.0	이용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00
19	남해	삼동	금송	886	진	466.0	64.0	이재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20	남해	삼동	금송	885	진	402.0	28.0	이용오	서울특별시 강서구 000
21	남해	삼동	금송	1199-6	답	369.0	96.0	이상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에월읍 000
22	남해	삼동	금송	1199-1	대	686.0	23.0	이상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에월읍 000
23	남해	삼동	금송	1429-4	구	4,397.0	710.0	국(농림축산식품부)	-
24	남해	삼동	금송	911-1	도	137.0	22.0	승산규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25	남해	삼동	금송	912-3	도	196.0	30.0	임종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26	남해	삼동	금송	914-1	도	197.0	21.0	남해군	-
27	남해	삼동	금송	917-1	도	59.0	24.0	이용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합계						29,732.0	4,300.0		

남해군 공고 제2024 - 418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금송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금송소하천 정비사업
- 출입구간 :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14-1 일원

2. 출입기간 : 2024. 3. ~ 사업 종료 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남해	삼동	금송	1031	구	10,921.0	2,010.0	국(농림축산식품부)	-	
2	남해	삼동	금송	1338	도	276.0	59.0	국(농림축산식품부)	-	
3	남해	삼동	금송	1019	답	922.0	23.0	권순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4	남해	삼동	금송	1030-13	답	391.0	44.0	이종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5	남해	삼동	금송	1030-11	답	454.0	3.0	이규오	-	미등기
6	남해	삼동	금송	1287-3	답	649.0	86.0	이호오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길 000	
7	남해	삼동	금송	1287-1	답	668.0	66.0	김욱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8	남해	삼동	금송	1029-1	답	1,332.0	51.0	이동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9	남해	삼동	금송	931-1	도	199.0	42.0	이주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000	
10	남해	삼동	금송	1434	도	2,536.0	645.0	국(국토교통부)	-	
11	남해	삼동	금송	928-3	도	114.0	20.0	이정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12	남해	삼동	금송	922-1	도	39.0	9.0	김욱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13	남해	삼동	금송	910-1	도	91.0	3.0	김욱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14	남해	삼동	금송	1017-1	답	1,367.0	11.0	남해군	-	
15	남해	삼동	금송	1009-1	답	957.0	24.0	곽귀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16	남해	삼동	금송	889-2	답	803.0	22.0	이용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00	
17	남해	삼동	금송	1437	도	364.0	13.0	국(국토교통부)	-	
18	남해	삼동	금송	888	답	740.0	151.0	이용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00	
19	남해	삼동	금송	886	진	466.0	64.0	이재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20	남해	삼동	금송	885	진	402.0	28.0	이동오	서울특별시 강서구 000	
21	남해	삼동	금송	1199-6	답	369.0	96.0	이상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000	
22	남해	삼동	금송	1199-1	대	686.0	23.0	이상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000	
23	남해	삼동	금송	1429-4	구	4,397.0	710.0	국(농림축산식품부)	-	
24	남해	삼동	금송	911-1	도	137.0	22.0	승산규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25	남해	삼동	금송	912-3	도	196.0	30.0	임종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26	남해	삼동	금송	914-1	도	197.0	21.0	남해군	-	
27	남해	삼동	금송	917-1	도	59.0	24.0	이용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000	
합계						29,732.0	4,300.0			

남해군 공고 제2024 - 421호

『안지소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안지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11.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4. 3. ~ 2025. 5.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지소하천 정비사업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241번지 일원	과업연장 L=750m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4. 3. 11. ~ 2024. 3. 25.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3. 11. ~ 2024. 3. 25.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소 유 자		비 고
	군	면	리						주 소		
1	남해	이동	용소	1241	답	509	40	남해군	-		
2	남해	이동	용소	1243	답	149	78	박왕O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000		
3	남해	이동	용소	289-1	답	663	6	박왕O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000		
4	남해	이동	용소	289-2	답	653	12	박왕O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000		
5	남해	이동	용소	289-3	답	845	18	김현O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000		
6	남해	이동	용소	393	구	9,896	1,721	국(농림축산식품부)	-		
7	남해	이동	용소	277	답	514	47	김남O	남해읍 아산리 000		
8	남해	이동	용소	391	도	997	10	국(농림축산식품부)	-		
9	남해	이동	용소	1570	구	8,551	1,357	국(농림축산식품부)	-		
10	남해	이동	용소	1078	답	714	44	강상O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000		
11	남해	이동	용소	1084-5	답	11	11	박지O	남해군 이동면 000		
12	남해	이동	용소	1084-4	답	852	200	김동O	서울특별시 강서구 000		
13	남해	이동	용소	1083	답	261	19	양승O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000		
14	남해	이동	용소	1084-1	대	607	51	김동O	서울특별시 강서구 000		
15	남해	이동	용소	1086	답	912	259	양무O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000		
16	남해	이동	용소	1574	도	50	13	국(국토교통부)	-		
17	남해	이동	용소	1573	도	979	5	국(국토교통부)	-		
18	남해	이동	용소	1030	전	26	26	박옥O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000		
19	남해	이동	용소	1029	답	50	18	양왕O	부산 사하구 000		
20	남해	이동	용소	1016	전	1,742	103	양무O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000		
21	남해	이동	용소	1014-2	전	145	7	국(기획재정부)	-		
계						29,126	4,045				

남해군 공고 제2024 - 422호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음

3. 주요내용

- 가. 제2조제1호 중 “만 12세” 를 “12세” 로 한다.
- 나. 제4조제2항 중 “만 12세” 를 “12세” 로 한다.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3월 2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829, 팩스 055-860-389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전화 055-860-38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 를 “12세”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만 12세” 를 “12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 3. (생략)	제2조(정의) ----- -----. 1. ----- 12세 ----- ---.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① (생략) ② 지원 연령은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12세 ----- --.

남해군 공고 제2024 - 424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안지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안지소하천 정비사업
- 출입구간 :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241번지 일원

2. 출입기간 : 2024. 3. ~ 사업 종료 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소 유 자		비 고
	군	면	리						주 소		
1	남해	이동	용소	1241	답	509	40	남해군	-		
2	남해	이동	용소	1243	답	149	78	박항오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000		
3	남해	이동	용소	289-1	답	663	6	박항오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000		
4	남해	이동	용소	289-2	답	653	12	박항오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000		
5	남해	이동	용소	289-3	답	845	18	김현오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000		
6	남해	이동	용소	393	구	9,896	1,721	국(농림축산식품부)	-		
7	남해	이동	용소	277	답	514	47	김남오	남해읍 아산리 000		
8	남해	이동	용소	391	도	997	10	국(농림축산식품부)	-		
9	남해	이동	용소	1570	구	8,551	1,357	국(농림축산식품부)	-		
10	남해	이동	용소	1078	답	714	44	강상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000		
11	남해	이동	용소	1084-5	답	11	11	박지오	남해군 이동면 000		
12	남해	이동	용소	1084-4	답	852	200	김동오	서울특별시 강서구 000		
13	남해	이동	용소	1083	답	261	19	양승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000		
14	남해	이동	용소	1084-1	대	607	51	김동오	서울특별시 강서구 000		
15	남해	이동	용소	1086	답	912	259	양무오	1089		
16	남해	이동	용소	1574	도	50	13	국(국토교통부)	-		
17	남해	이동	용소	1573	도	979	5	국(국토교통부)	-		
18	남해	이동	용소	1030	전	26	26	박욱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000		
19	남해	이동	용소	1029	답	50	18	양웅오	부산 사하구 000		
20	남해	이동	용소	1016	전	1,742	103	양무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000		
21	남해	이동	용소	1014-2	전	145	7	국(기획재정부)	-		
계						29,126	4,045				

남해군 공고 제2024 - 444호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33340호, 2023. 3. 21. 일부개정) 사항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택시의 차령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택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택시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4월 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55,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교통팀(전화 055-860-34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남해군수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조정 절차) 제2조에 따른 기본차령의 조정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남해군수”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경우 본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남해군 공고 제2024-450호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남해에코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설치 및 위치, 캠핑장 시설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이용 신청, 이용시간, 이용료 등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규정(안 제7조~제8조)

라. 시설의 운영 중단 및 이용 제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마. 사용허가 및 위탁 규정(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4월 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환경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253, 팩스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에코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코촌 캠핑장 설치 및 위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에코촌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64-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캠핑장 시설) 캠핑장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라반
2. 카라반 사이트
3. 오토캠핑 사이트
4. 물놀이장
5. 매점
6. 관리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이용 신청 등) ①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 한다.

제6조(이용료 등) ① 이용자는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를 캠핑장 시설 이용 승인일 부터 24시간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이용자가 별표 1 제2호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캠핑장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별표 1 제2호에 따라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남해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가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1. 남해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5.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

자녀가정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시설이용권의 양도·대여 금지)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운영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제12조(사용허가 및 위탁)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사용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5~6조 관련)

1.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시설구분	이용기준	비 수 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카라반	6인용	1동/1일	150,000	200,000	220,000	● 종량제봉투 (20ℓ) 1매 지급 ● 전기,수도 사용료포함
카라반 사이트	캠핑카	1면/1일	50,000	70,000	90,000	
	오토캠핑	1면/1일	35,000	50,000	60,000	
오토캠핑 사이트	야영테크 (m×m)	1면/1일	35,000	50,000	60,000	
물놀이장	m ²	시설이용자	미운영		무료	샤워장 이용포함
		방문객			5,000	
자전거	1시간	1인용	2,000		2,000	
	1시간	2인용	3,000		3,000	

※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2. 초과 기준 등 (단위 : 원)

구분	시 설 명	기준	초과 기준	추가이용료
이용시간 초과	카라반 카라반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	1시간 미만	5,000
			1~2시간	10,000
			2~4시간	20,000
			4시간 이상	1일치
이용인원 초과	카라반	6인/최대8인	1명당 (36개월이상)	10,000
	카라반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4인/최대6인		5,000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5~9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3~4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1~2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90% 반환 -이용료의 50% 반환 -이용료의 30% 반환 -반환 불가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태풍 등에 의한 강풍(이용예정일 기상청 기상특보의 주의보 이상), 호우(강풍과 동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남해군 공고 제2024 - 452호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 개정이유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음

3. 주요내용

- 가. 제2조제1호 중 “만 19세” 를 “19세” 로 한다.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4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49, 팩스 055-860-389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전화 055-860-86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안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 를 “19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19세 ----- --. -----, 19세 ----- ----- -.</p>

남해군 공고 제2024-455호

유어장 지정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62조 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마을어장 내 유어장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 유어장 지정 현황

지정 받는 자	지정번호	유어장명	지정 위치	면적(ha)		지정기간
				어장 면적	유어장 지정 면적	
지족어촌계	00070	지족어촌계 유어장	삼동면 지족리 (마을어업 215호)	12	5	2024.03.12. ~ 2033.12.30.
대곡어촌계	00071	대곡어촌계 유어장	창선면 대곡리 (마을어업 295호)	17.4	8.5	2024.03.12. ~ 2029.01.10.

2024년 3월 13일

남 해 군 수